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7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박성훈의원안·정부안)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47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0. 2.
- (3) 회 부 일 : 2024. 10.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박성훈의원안·정부안)

현 행	박성훈의원안·정부안
☐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 (§275의3) *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 ○ 처벌대상 - 납세 신고 시 - <추 가> ○ 처벌형량 - 명의대여·사용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현행과 같음) - <u>탁송품·우편물 수입 시*</u> * 탁송품· 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 ○ 타인명의 사용행위 형량 강화 - <u>자신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u>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 <u>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u> ○ 시행일 (정부안) 2025. 1. 1. (박성훈의원안) 이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

* 박성훈의원안 2024.10.2. 제출 (의안번호 4477)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399)

☐ 개정안은 현재 탁송품 · 우편물 등으로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관세 회피등을 위해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 대한 명의도용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① 명의대여행위죄 대상에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② 타인 명의 사용행위의 처벌 형량을 「조세범처벌법」 등 유사법령을 고려하여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②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¹⁾ 이는 「관세법」이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납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²⁾,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모두를 관세탈루 조장행위로 보아 처벌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³⁾

□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로 납세 신고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어 명의도용으로 상용품을 자가사용품으로 위장하여 밀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수입현황]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만건)	6,358	8,838	9,613	13,145
금액(백만불)	3,759	4,664	4,736	5,293
전체수입건수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	81%	85%	87%	89%

현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물량은 폭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

1) 「관세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2022.11, 기획재정부위원회 전문위원

체 수입건수 대비 전자상거래의 비중도 점증하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직구 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탁송품 및 우편물을 수입하는 행위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개인통관부호 도용 적발 사례]

'20년		'21년		'22년		'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9	75	25	213	63	208	67	349

* (단위: 건, 억원)

□ 현재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중 150\$ 이하(한미FTA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 이하)의 자가사용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만을 제출하며 수입신고는 생략되고 관세와 부가세가 미부과 되며⁴⁾, 자가사용 식품, 화장품, 전기용품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 법령의 허가·승인등 요건 구비의무 역시 면제됨.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자가사용물품의 간소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하여 상용품을 밀수하는 범칙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임.

관세청은 개인통관번호 도용 민원이 급증하자 이에 대응하여 도용신고 전용창구를 신설하였고, 2023년 3월 이후에는 매월 1,000건 이상의 명의도용 범죄가 신고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명의도용 처벌대상을 '납세신고'로 한정하고 있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불법 해외직구 사례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임. 특히 자가소비용 직구물품은 납세신고 없이 통관목록만을 제출하면 되므로 타인 명의로 납세신고를 하는 범법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아 해외직구 시 명의도용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① 탁송품 및 우편물의 수입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두어 명의를 대여하여 해외직구를 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② 유사범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폭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관세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관세 및 복잡한 통관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관세탈루 행위로서 처벌하려는 것임. 특히 개정안을 통해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해외직구 수입이 포함되어, 기존의 법률규정 미비로 처벌이 어려웠던 타인 명의도용 해외직구 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이는 타인명의도용 해외직구의 의심건수 및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의 사전적인 억제 효과를 통해 건강한 해외직구 및 수입통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

는 측면이 있음.

다만, 범죄의 선제적인 예방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현행 법상 동 조항이 2022년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관세탈루를 조장한 행위자로 보아 처벌규정을 두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 양도를 고의로 허락한 자 역시 관세탈루 조장행위자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⁵⁾

□ 둘째,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납세신고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량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의 벌금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는 「관세법」상의 명의대여 처벌 형량이 명의대여를 처벌하고 있는 유사 법률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법적 정합성을 갖추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음.

「조세범처벌법」⁶⁾ 및 「지방세기본법」⁷⁾ 모두 일관되게 타인의

5) 다만 타인 명의도용 해외직구는 유출된 개인정보등을 통해서 무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빈번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명의의 사용을 고의로 허락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처벌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음.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유사 법률과의 법적 일관성을 갖추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상의 명의 대여 행위 처벌형량]

법령명	처벌행위	처벌형량
조세범 처벌법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 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 도록 허락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방세 기본법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이 자신의 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 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 의 처

02)6788-5158

7)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